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4. 28

개정 2021. 9.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온라인 강좌, 실시간 화상 강좌, 온라인 병행 강좌 등을 모두 포함한다.

1. ‘온라인 강좌’는 수업의 100%를 비실시간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2. ‘실시간 화상강좌’는 사전에 정해진 강의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3. ‘온라인 병행(Blended Learning)강좌’는 온라인 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대면 강의를 병행한 수업을 의미한다.
4.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강좌’는 정해진 강의시간과 무방하게 비대면 수업 또는 학습활동을 진행한 뒤에 강의시간에 문제해결 및 토론식 수업 등을 병행하는 형태의 수업을 의미한다. 플립드 러닝 강좌는 온라인 병행 강좌에 포함된다.
5. ‘원격수업운영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포스테키안 학습관리시스템(POSTECHIAN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으로 명칭한다. 이하 ‘PLMS’ 라고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장, 학술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한다.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원격교육지원센터)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수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혁신센터장이 겸직한다. 센터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원격수업 운영

제5조(수업 개설) ①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이하 ‘교원’)는 원격수업 개설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강좌 개설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원격수업 운영방법은 학과별 개설과목 제출 시 명시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하고, 교수자는 강의계획서에 원격수업 운영방법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한다.

③ 원격수업의 학사 운영은 학칙 및 학사 지침에 규정된 오프라인 강좌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6조(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 일수는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온라인 강좌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개발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동영상 강의 학습시간은 동영상, 학습활동(퀴즈, 토론, 프로젝트, 과제, 등) 등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1학점 기준 주차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동영상은 1학점 기준 주차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 구성상 일부

주치의 동영상 학습 시간이 25분미만이 될 경우, 전체 주치의 총합을 계산하여 평균 25분 이상이 충족되면 이를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21.9.14)

- ④ 동영상 콘텐츠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만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동영상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원격수업지원센터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업 운영) ① 원격수업 내 동영상 콘텐츠는 PLMS 에서 출석 관리, 학습활동 기록, 수강생 개별 접속 기록, 수업 동영상 재생 등 학습 관련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개발 교과목의 원격수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 수강생의 출결 관리는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강의 담당교수가 수업 당일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격수업 성적평가는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며, 강의계획서에 입력한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의 결과는 성적 제출 마감일까지 입력하여 학생들이 확인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⑥ 원격수업 운영 및 온라인 강좌 콘텐츠 제작 실적은 당해 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강 및 이수) ①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9조(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개발 온라인 강좌의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③ 원격수업을 위해 개발된 콘텐츠는 최초 PLMS 탑재 학기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 기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설 학과에 통보 후 폐기하도록 한다.

제10조(지적 재산권) ① 본 대학이 개발비를 지불하여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 등 저작물의 저작권은 본 대학에 있다.

- ② 개발 교수가 본 대학에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저작물을 교내 교육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동영상 콘텐츠 등 저작물 제작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복사나 활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 부서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하며 원격수업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과 교육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2021. 9. 14.개정)

이 규정은 2021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